

내무국소관 감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감사반편성표

제1반 이원찬 김주홍 홍용준
제2반 김동순 강을순 이기환
제3반 이용린 이종원 신중수

목 차

제1장 총 론
제2장 시청내무국소관
제1절 인사행정에 대하여
제2절 예산집행및편성에 대하여
제3절 공보행정에 대하여
제3장 각구청소관
제1절 총무주관에 대하여
제2절 동행정에 대하여
제3절 직십자회비징수및기취급에 대하여
제4장 위생경찰소관
제1절 위생경찰에 대한서언
제2절 분노수거에 대하여
제3절 청소에 대하여
제4절 청소비경리사무취급에 대하여
제5장 소방과소관
제1절 소방운영에 대한서언
제2절 소방요원에 대하여
제3절 소방시설에 대하여
제4절 소방비에 대하여
제5절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제6장 결 론

제1장 총 론

지방자치법이 공포된후 6.25동란으로인하여 한수이북에는 지방자치체실시를 보류하고있던중 단기4289년9월5일 역사적인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후 최초로 저반2주일간에 공하여 시정감사를 실시케됨은 기간 부패시경이란 세평을받아오든 시행정집행에대하여 160만시민의 의회를풀어 주며 한편으로는 집행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기위하여 금반 감사에있어서 금반시정및 의회운영에 대한 제반 참고자료를얻는 일방부당한면을 시정하는건지에서 기소득은 불소한것으로 사료되는바 당내무감사반에서는 시행정의 중 적사무담당하고있는 내무국소관 전반에공하여 집행된 제반행정 면을 검토하여 금후 주로 시자치행정의 향상발전에 기여코저함

제2장 시청내무국소관

제1절 인사행정에 대하여

인사행정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좌우하는 사무적인 만큼 우선 이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담당자 배치로부터 신중을 기하여 적재적소로부터 기용할 것은 더 말할 것 없으나

당시 기간 인사행정을 볼 때 공정을 기한 적재적소의 인사교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인사행정이 다년을 두고 경제된 감이 불소한바 금반감원을 계기로 하여 대폭이동으로 다소 시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으나 아직도 시정할바 허다하다고 사료되는 바가 불소하나 이것은 인사문제인 만큼 일일히 지적할 수는 없으나 각별히 유의하여 공무원이 안심하고 맡은 바를 완수하도록 공정무사한 인사행정을 하여 주시기바라며 또 시민과 접촉되는 일선행정에 유위유능한 인재를 배치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인사담당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하는 동시에 시정을 요하는 제점을 지적하지 않음

1. 국가지방공무원을 막론하고 전형미필자가 상급 61명이나 유함은 소관사무 책임자의 태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자격심사의 엄정을 기하여 조속처리할 것
2. 공무원 채용발령에 있어서 서류미비된 사례가 허다하며 각청에서도 동일 한 예를 발견 하였음
3. 구청, 출장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시정과 장의 서면대신에 의하여 처리하라는 내부부장관의 훈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과의 일방적 처사로 말미암아 인사행정면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는 현상이니 급후시정을 요하는 것으로 사료함
4. 시청으로서 당연히 하부각구청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1차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음은 상부관청의 사무태만과 감독불충분의 소치인 것으로 사료함

제2절 예산집행 및 편성에 대하여

예산이란 1회계년도의 행정계획을 재정적으로 종합한 재정계획서인 동시에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재정면으로 표시한 행정계획서라고도 볼 수 있거니와 시예산은 시민의 부담한계를 책정하고 시행정의 규모와 지향하는 방향을 명시하여 시민의 복리를 최대한으로 갖어 올 수 있게 하는 시행정에 대한 종합적 견제서라고 말할 수 있으니 예산집행의 적부는 시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바지대함은 물론이요

단기 4288년도 시예산집행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건대 세입의 부진으로 인하여 예산집행의 정상성을 실행하오며 당초의 계획서를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하여 타관항목에 유용하였다거나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업을 등한히 하였다는 감을 금치 못할 점이 있으나 기왕에 집행한 사업은 후문제일로 차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를 피하거니와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의 완급과 경중을 엄밀히 선택하고 불요불급의 경비를 배제하여 오로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책정된 최선의 건전한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되도록 특히 주의할 것을 기대함

제3절 공보행정에 대하여

현재당시에서 발행하는 「뉴-스서울」은 기기사가 대부분 각 일간신문에서 기보도한 사실을 취급함으로써 시민들은 별 흥미를 느끼지 않을 뿐더러 기보방법이 대단히 복잡하여 각 통반장들은 물론 각 동사무소의 가장 두통거리일뿐이며 국민반원은 일일 허날인을 함으로 행정시의 회람편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민에게 주는 이익은 별무하고 시예산면으로 볼 때 6.25동란으로 인한 파양상을 재복구함이 초미의 급무인데 불구하고 단기 4287년 분지 창간 이래 거 10월 말 일 현재까지 발행부수 330만부로서 소요지출계정은 2천2백4십8만2천여 원인바 영세한 시민의 살림에서 징수한 세금으로 사중 불요불급의 사안에 막대한 예산지출이란 있을 수 없는 처사임으로 분지는 부수를 주리고 경비를 절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함

제3장 각구청 소관

계1절 총무주관에 대하여

1. 구청장의 결재없는 서류를 시행한 것이 허다한데 여사한 사례는 사무처리의 체계가 확립되지 않는 데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임
2. 전반적으로 청사가 불결함은 감독자들의 청소에 대한 시범이 희박한 것으로 인정되니 시정하야 청필
3. 구청에 대한 부인회 간판을 게시하는 사례가 유한데 행정관청에 단 간판을 게시함은 부당하다고 사료함
4. 민원서류의 처리 및 각종 문서의 정리가 조촐한 점이 허다하니 조속시 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5. 시각급선거위원회를 구청장이 배수추천함에 있어서 자유당을 비롯하여 국민회 대한노동당 여당계통인 물 우는 여당에 가까운 무소속계인 물 뿐이고 야당계인 물 을 제외하고 있음은 공정한 선거를 한다고 보증할 수 없으니 차후에는 여사한 처사가 없도록 하여 줄 것
6. 시의원 선거 당시 선거비 목록 미배부액이 별표와 여하다

구	별	소 요 액	기 배 부 액	미 배 부 액
총	로	5497250	3864050	1633200
중	구	4618350	3277950	1340400
동	대	3339450	2686550	1152900
성	동	4421350	3176950	1244400
성	북	3982250	2829350	1152900
서	대	4867550	3483650	1383900
마	포	3823450	2622550	1200900
용	산	4290950	3074450	1216500
영	등	4902650	3392450	1510200
	계	40243250	28407950	11835300

해금액은 여하한 비목의 예산으로 하시에 영달 것 인지 의문이며 조속히 해결할 필요 가 유한 것으로 사료함

7. 공무원 봉급에서 원천과세를 공제 하여 장기간 납부치 않고 또는 기보관에 있어서도 석연치 못한 점이 유하니 조속 처리케 하고 차후 여사한 처사가 없도록 충분한 감독을 요함
8. 좌기 사무에 대하여는 전폭적으로 구청에 이양하여 자주적인 입장에서 행정의 능률을 거양토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 A. 일반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
 - B. 교통세 및 도로손상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
 - C. 호별세등급 31등 이상 결정권 이양
 - D. 시내 고지대 사설 수도가압 시설의 시 지역 양수의 사무
 - E. 제과업 허가 사무
 - F. 행정대서 및 소개업 정원 조정 사무
 - G. 유통 및 연료 배급 사무
 - H. 공설 시장 관리 사무
 - I. 도장 운영 및 도축 검사 사무
 - J. 분배농지 사무 중 경중을 고려하여 이양할 것
 - K. 정부 관리 양곡 및 공립 조작 사무
 - L. 도로 및 하천 유지 관리 사무
 - M. 4급 지방 공무원 전형의 사무
 - N. 제세소설치 허가 사무

- O. 각종 제조장설치허가사무
- P. 후생시설단체에대함지도감독및구호물자배정사무
- Q. 식육판매업등급사정에관한사무
- R. 의료업자의취체감독및개설,폐지,등록허가사무
- S. 마약취체에관한사무
- T. 각종생산공장에대한원료수급조정의사무
- U. 여인숙 음식점영업허가사무
- V. 구배치운전원에대한입면기타일절신분에관한사무

제2절 동행정에대하여

단기4288년4월18일 종전의 동회제를해체하고 지방자치법에의한동제를실시하여 245개동을설치하고동을 명실상부한서울특별시 의 말단행정기관으로서의체제를확립하고 구청장감독하에 동정의 개선강화를도모한 어언간1년7개월을경과하였으나 동정실태를본즉 지방자치법의결함은물론이고또 시집행부의동정에 대한 미은적인지도와 동직원의질적향상을도모함이없는 사무를맡길수없다는 구실로의연허상부기관의집권주의로편중하는관계로 동제개편전동회시절보다도 동정운영은위축일로를걸고있는현실이머기원인을구명하여보면

1. 시의최말단동행정을마치 관영사업시하여 동정비특별회계를설치한고로 동세징수부진으로 근소한 동정비나마 항시영달이지연되는관계로 동정운영은마비상태에 빠지는실정인즉차점을고려하여 동정비특별회계를단연폐지하고 일반회계에편입합이타당하다고사료함

2. 동장을민선으로하고 기처우에있어서는 시동직원규칙제8조에의하여 지방공무원령제42조에규정된읍장의 월봉급상당액을 지불한다고하였으나 지방자치법제145에의하면 서울특별시동장을 지방시, 읍, 면, 의동리장과동일시한점은 서울특별시가 실정이부합되지않으니 동장의 지위에대하여는 급후지방자치법을조속히 개정할 필요가유하다고인정함

3. 동제실시후단기4288년5월7일 서울특별시동사무규칙 (제62호) 을 제정하여 동장의관장사무는 39종목으로책정하였으나 실지 시민과밀접한관련이있는계원조사사무와국가위임사무인 병사사무를 이양치않고다만 동직원이사무적으로 미숙하다하여 동행정을극히경시함은부당하다고사료되니 조속히사무를이양하는동시에 동직원의질적향상에 유의하여줄것

4. 국민반은행정의 최말단조직체로서 모든국가시책이 이조직을통하여 국민하나하나에 침투되는 만큼 상의하달과하의상달은 국민반활용에하여좌우됨에도불구하고 시국민반운영위원회나 집행부 당국자들이국민반대표인동반장처우문제라든지 국민반조직강화에 대하여미은적이고 냉담적인실정이므로 말초신경이위축되어있는것

이상과같은 실정을제고하여 상급기관의집권주의를폐기하고 말단행정기관에 유위유능한직원을 배치하는일련현동직원을교양하여 질적향상을도모하는동시에 각동에는좌기사무를이양하여 지방자치행정의미를거양토록함이가하다고사료됨

- A 호적, 기류, 병사사무
- B 세원조사및부과징수
- C 가사용급수사용료징수
- D 적령아동조사및취학통고
- E 현재실시중인 11종목이외의 제증명사무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양확대할것

5. 용산구청과3가동에서는 미부입직원에대하여숙직을명령하는동시에 숙직근무를한것처럼기록된 사례가유한데사소한사례라고할지라도 여사한에는사무취급에대한체계가무한처사이니시정을요함

제3절 적십자회비징수및그취급에대하여

대한적십자회비는 서울지사배당액4천5백만원을징수함에있어서 종래부터 행정말단기관을통하여

회원 (전세대주) 으로부터 징수하여 온 것은 판례화되어 있으나 기간정부통령선거 및 시의원선거 등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징수를 중단하고 있든바, 각급선거가 완료 후인 9월 초순부터 강력 징수를 시작하게 되어 각 구청에서는 지방세 기타 주세의 징수에는 조호려하여 각동을 독려하여 적십자회비 징수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구청을 막론하고 적십자회비를 소정 기일 내로 완납치 못하는 동에 대하여는 해당동에 대하여 반강압적인 방법으로 승낙서를 받고 기동에 대한 예산영달액 (65반기) 중에서 미납회비를 공제하였음은 말단동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부당한 처사이며

동운영에 불가결한 예산영달을 적십자회비로 유용함은 공금횡령행위로 판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기책임은 의당 각급 행정 책임자가 견야 할 것으로 사료하는바

각동에서도 기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급급한 나머지 실제로 동민들로부터는 완전한 징수되지 않는 사실이 장부상에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구청에는 완납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각종 공금을 유용하여 대납한 근거가 확연하며

여사한 과도한 징수 방법으로 인하여 각종 공금 유용 등의 불미로운 사실이 허다함으로 차에 대하여 각급 책임자는 금후 다시 여사한 처사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바랍

1 중구청에서는 89년도 적십자회비 배당액 5,330,700원 중 소정 기일까지의 미납액 1,884,000원을 6.5반기 동정비 특별회계 예산영달액 중에서 유용하여 10월 8일 완납하였고

2 성동구청에서는 89년도 적십자회비 배당액 3,432,000원 중 소정 기일까지의 미납액 523,144원을 각동에 배부된 동정비, 「관공비」 중에서 일체하여 10월 5일 완납한 사실이유하며

3 기외수개구청에서도 산하동에 대하여 적십자회비 징수 성적이 불량하다 하여 각동에 영달된 예산액 중에서 기합식을 공제하여 회비로 유용한 사실이 허다히 발각되었음

제4장 위생경찰소관

제1절 위생경찰에 대한 서언

위생사무는 단기 4286년 12월 14일자 대통령령 제 843호 청소 및 객영업의 사무관장에 관한 임시배치령으로서 읍시장 및 각 도지사에 계이관되어 경찰로 하여금 기사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기소관사항 중 시비로 운영되는 청소사무에 대하여 그 주무당국인 시경본국 위생계를 비롯하여 시내 9개 경찰서 위생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 현재 160만 시민의 생리적 부산물 로배설되는 과대한 양의 분뇨진개 등의 오물을 적기에 일소하여 수도를 깨끗한 위생도시로 만들기에는 예산면이나 설비면에 있어서 미흡한 감이 불소하며 금후 주무자들의 성의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가 가일층 요청되는바임

제2절 분뇨수거에 대하여

저반항간에는 오물수거에 대한 불미스러운 세평도 유하였으나 실지답사로서 진상을 파악한 결과 분뇨차 1대에 대한 공과금이 9만원으로부터 12만원으로 인상된 것과 분뇨수요기가 하절이나 동절에는 분뇨저분이 잘되지 않는 관계로 공과금 조차 납부하기 곤란한 실정이며 수지타산이 안된다는 이유로서 기계 약정소대행업자 중에서도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향이 유하여 비능률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하니 현행대행업자가 수거하는 방법은 차를 폐지하고 직접수거하여 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민 조합에 일임하여 연중 4계절을 통하여 완전수거토록하며 영리들도 모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이권을 주는 일이 없도록 금후 시정을 요하는 제점을 예기하면 여좌함

1 현재 각서에 배당되어 있는 분뇨차 수량에 있어서 기대수의 증가를 요하는 서와 대수의 삭감을 원하는 서가 있으니 차를 제조정하여 중점적으로 배당하여 줄 것

2 시내 공동변소 설치 상황을 보면 기설 110개소와 공사중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과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유한바 증설시에는 인구비례와 통행량을 참작하여 필요한 장소에 이용 가치 있도록 설치할 것이며 공동변소 관리의 일당이 불과 200원인바 여사한 저금으로서는 성실성있게 관리를 못할 것임으로 시정요청됨

3 어떤 지역에서는 분뇨처리장우는 분뇨저류조가 없어서 부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하니 해시설을 확장하든지 제검토하여 급속히 조치함이 가하다 고사료됨

제3절 청소에 대하여

현재경찰국에서 직접관리하고있는 청소차를 일선서로 배당하여줄것을원하는바 기이유는본국에서 직접관리하는 관계로관내실정에부합되지않는경우가허다하여 실제로필요한개소에차를돌리지못하는수가있을뿐외라 운전수에대한인사권조차서장에게는없으니 감독상에도애로가있고하여작업능률의향상을기할수없으므로청소차는전적으로일선서에배당시켜서장부책하에운영토록합이가하다고사료됨

제4절 청소비경리사무취급에 대하여

- 1 각서를통하여 각종입찰에있어서사무적으로조루한점이허다한바 금후각별유의하여시정합이 가하다고 사료됨
- 2 급여소득을비롯한 각종원천과세를공제하여수개월식이나 납부하지않고예금조차한형적이무함은 기보판에의아스러운점허다하며 여사한사례는 공금횡령행위로단정하지않을수없음

제5장 소방과소관

제1절 소방운영에관한서언

인구160만을산하는 수도서울에있어서 지난1년간의화재상황을일람하면

화재건수	117건		
피해액	203,317,000환		
인명피해	사망 10 부상 55	계 65명	

이상과같이 화마로인하여 귀중한인명과재산을 일조일석에 소진 하고있으나 현재당시소방행정 의 실태를보면 소화전기타 방화용수리시설의불비와 편자집기타무허가건축물등으로 인한 교통장애로인하여 화재발생시의 소화작업에 지장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시내에는 현재4개소방소와 19개의 소방관파출소(기중 9개는미복구) 가있으나 인원부족과 예산부족으로 활동상지장이 막대한 실정이며 현재 기구와 시설로서는 시민의 생명재산을 화마로부터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인정됨으로 금후소방행정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가하여 시자체가 좌우할수있는 소방기구를 만들어 인원및기구등 제반시설의 만전을 기하여 수도소방을반석위에 놓이도록함이 시급히요청됨

제2절 소방요원에대하여

- 1. 현재수도서울은 호수173,389 세대수 281,631을 갖고있는데 차에비하여 방화요원은 불과

소방관	164명
응원경찰관	144명
계	308명

인바 해인원로서는 도저히 소방에 만전을 기하기 곤란한 실정이며 소방요원의 부족상을 가히짐작할수 있을것으로 조속한 시일내로 증원개편이 촉구되며 소방차1대에는 최소한7명의 인원을 요하는데 차인원으로서는 유사지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고나면 소방차1대에 2명정도밖에 배당되지않는 실정이므로 중량이많은 고무호-스틀등고 높은장소에서 소화작업을 함에는 막대한 고생을 면치못할뿐더러 소기의능률을 거양할수없는 실정임